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2년 10월 2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2년 10월 2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· 제100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(2002년10월11일) 상정

· 제100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(2002년10월11일)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녹지공원과장 권진해)

□ 제안이유

○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 허가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이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관련사항을 조정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○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 허가시 수수료 징수 관련사항을 삭제함 (안 제25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부천시에서 점용허가한 건수는	○ 없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상위법인 도시공원법시행규칙이 이미 오래 전에(1993년)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

○ 다행히 부천시에서는 공원 및 녹지점용 허가한 사례가 없어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받지는 않았으나,

○ 관련부서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및 근거에 없는 불합리한 규정은 발생 즉시 정비하기 바람.

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39호
의 결 년 월 일	2002. 10. 17 (제100회)

제출년월일 : 2002. 10. 1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 안 이 유

○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 허가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이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관련사항을 조정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□ 주 요 골 자

○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시 수수료 징수 관련사항을 삭제함.
(안 제25조)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도시공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를 삭제한다.

별표 5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제25조(수수료등) ①법 및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및 허가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별표 5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②이미 납부된 수수료는 과오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	〈삭 제〉
[별 표5] 수 수 료 구 분 / 단위기준 / 금 액 / 비 고 허가 및 위탁신청 / 200㎡ 미만 / 3,000원 / 수수료는 부천시 수입증지로 납부함 허가 및 위탁신청 / 200㎡ 이상 300㎡ 미만 / 5,000원 / 수수료는 부천시 수입증지로 납부함 허가 및 위탁신청 / 300㎡ 이상 / 10,000원 / 수수료는 부천시 수입증지로 납부함 변경허가신청 / / 5,000원 /	〈삭 제〉